

## □ 經濟企副院告示 (第56号)

## — 景品類제공에 관한 不公正去來行爲지정 告示 —

독점규제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  
第15條 3号 및 同法시행령 第21條 2項  
의 규정에 의하여 景品類제공에 관한  
不公正去來 행위를 다음과 같이 지정,  
告示한다.

1982. 3. 19

經濟企副院長官

第1條(目的)이 告示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5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당한 景品類의 제공에 의한 고객의 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條 景品類의 정의①이 告示에서 景品類라 함은 自己가 供給하는 商品이나 用役의 거래에 부수하거나 거래에 부수하지 아니하더라도 広告의 방법에 의하여 그 거래 상대방 또는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상의 利益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되는 아프터서비스 또는 당해상품이나 用役의 본래의 내용이나 이의 사용에 부수한다고 인정되는 경제상의 利益은 제외한다.

1. 物品·금전·할인권·상품권·기타 유가증권
2. 연예·영화 및 운동경기등에의 초대권
3. 편의 등의 용역
4. 기타 고객을 유인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제상의 이익

② 제1항에서 자기가 공급하는 商品이나 用役의去來라 함은 자기가 생산 또는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이 최종수요자에 이를 때까지의 모든 유통단계에서의 거래를 말하며 이에는 판매·임대·교환등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경제상의 利益에는 사업자가 특별한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제공할 수 있는 물품이나 시판되고 있지 아니하는 물품등이라도 그 거래 상대방이 통상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래 상대방의 노고에 대한 보수
2.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되는 대가의 감액 또는 수취한 대금의 일부반환

④ 제1항 단서에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되는 아프터서비스 또는 당해商品이나 用役의 본래의 내용이나 이의 사용에 부수한다고 인정되는 경제상의 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商品의 판매 또는 사용이나 用役의 제공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物品 또는 用役을 제공하는 경우
2. 2이상의 商品을 함께 판매하는 것이 상관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 하나를 무료로 제공받았다고 인식하지 아니하는 경우
3. 2이상의 상품에 각각 판매가격이 표시되어 있고 거래 상대방이 희망하면 그 중 하나만을 구입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당해商品 또는 用役의 성질이나 내용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第3條 (현상의 정의)①이 告示에서 현상이라 함은 추첨 기타 우연성을 이용하는 방법에 의하거나 또는 특정행위의 우열이나 정오에 의하는 방법에 따라 景品類의 제공상대방이나 제공하는 景品類의 가액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추첨 기타 우연성을 이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추첨권을 사용하는 방법
2. 영수증, 상품의 용기·포장등을 이용하여 추

## □ 告 示 □

### 첨을 행하는 방법

3. 商品의 일부에만 景品類를 넣은 후 구입자가 어느 상품에 경품류가 들어 있는지 알지 못하게 하는 방법
4. 모든 상품에 景品類를 넣되 경품류의 가액에 차등이 있고 구입자가 그 경품류의 가액을 알 수 없게 하는 방법
- ③ 제1항에서 특정 행위의 우열이나 정오에 의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응모시에 일반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예상을 모집하여 그 해답의 우열 또는 정오에 의하는 방법
  2. 商品에 관한 정보·지식 기타 취미·오락·교양등에 관한 문제의 해답을 모집하여 그 해답의 우열 또는 정오에 의하는 방법
  3. 경기·연기·유기등의 우열에 의하는 방법
- 第4條(景品類의 제공금지대상행위) 사업자가 경품류를 제공함에 있어서 미풍양속이나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기만적인 현상방법에 의하여 景品類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第5條(消費者景品類의 제공제한) 사업자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商品이나 用役의 거래에 부수하여 景品類(이하 “소비자경품류”라 한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 가액 景品類価額한도

1,000원 미만	100원 이하
1,000원 이상	거래 가액의 10% 이하로 하되 최고 25,000원 이하
50만원 미만	고 25,000원 이하
50만원 이상	거래 가액의 5% 이하로 하되 최고 50,000원 이하

第6條(消費者景品類제공의 적용제외)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경품류의 제공제한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景品類제공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見本 또는 선전용으로 제공하는 物品 또는 用役으로서 가액이 적은 경우
2. 자기의 商品이나 用役의 거래에 사용되는 1회한의 할인권 또는 할인율 약속하는 증표
3. 창업 또는 개업 기념시에 제공하는 物品 또는 用役으로서 가액이 적은 경우

第7條(消費者현상경품류의 제공제한) ① 사업자

가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에 부수하여 현상에 의한 景品類(이하 “소비자현상경품류”라 한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 가액 景品류가액한도

1,000원 미만	10,000원 이하	경품부상품 또는
1,000원 이상	30,000원 이하	용역 예상 매출
10만원 미만		액의 1% 이하
10만원 이상	50,000원 이하	

② 제1항의 예상매출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전년도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景品類제공에 정기간의 추정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text{예상매출액} = \text{전년도총매출액} \times \frac{\text{경품류제공예정일수}}{365}$$

③ 제1항에서 거래에 부수한 현상이라 함은 商品 또는 用役의 거래를 조건으로 현상에 의하여 景品類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는 것을 포함한다.

1. 商品의 용기·포장등에 응모권을 넣는 방법
2. 商品의 용기·포장등에 출제하는 방법
3.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해답이 용이해지는 문제를 광고등에 의하여 출제하는 방법
4. 상품의 구입자나 거래상대방등을 대상으로 하여 경기·연기등 특정 행위에 의하는 방법
5. 기타 来去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거래에 부수한 현상이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의하는 방법

第8條(특정한 소비자현상경품류의 제공금지) 2 이상의 商品을 구입하여야만 文字·회화·부호 및 카드등의 조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의한 소비자현상경품류의 제공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第9條(공개현상경품류의 제공제한) ① 사업자가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광고의 방법에 의하여 거래에 부수하지 아니하고 현상에 의한 景品類(이하 “공개현상경품류”라 한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 경품류가액한도

3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② 제1항에 있어서 广告의 방법이라 함은 상품의 포장이나 용기·팜프렛·신문·방송·영화등에 의한 商品광고나 기업광고 등을 말한다.	

第10條(현상경품류제공의 적용제외) 고도의 지식

## □ 告 示 □

· 기능 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반소비자가 용이하게 응모할 수 없는 것을 모집하고 그 내용의 우열에 따라 특정인을 선정하여 지급하는 代価 또는 보상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현상경품류 및 공개현상경품류의 제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第11條 (사업자경품류의 제공제한)** ①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에게 자기의 商品이나 用役의 거래개시를 위하거나 또는 자기가 거래하고 있는 商品이나 用役의 매출액등에 대하여 자기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景品類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에게 1인당 연간 30만원 이내의 景品類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자가 현상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에게 景品類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제1항 단서의 금액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2條 (事業者景品類제공의 적용제외)**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경품류의 제공제한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의 업무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景品類제공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당해상품의 판매 또는 보관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기 또는 시설의 제공
2. 広告·선전을 위한 장치·시설 등의 제공이나 広告·선전의 지원
3. 見本의 제공
4. 친목을 위한 회합시나 창업 또는 개업기념시에 제공하는 경품류

**第13條 (景品類의 제공회수 및 기간)** ① 사업자가 소비자경품류를 제공할 수 있는 회수 및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製造業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연4회 이내로 하되 1회당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종합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연4회 이내로 하되 1회당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사업자가 소비자현상경품류 및 공개현상 경품류를 제공할 수 있는 회수는 이를 합계하여 年3회 이내로 하되 1회당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신문발행업 및 정기간행물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4條 (거래가액등의 산정)** ①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액산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일반소비자가 통상적으로 구입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그 가격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래의 표준으로 사용되는 價格을 기준으로 한다.

2. 2이상의 商品이 조합되어 거래단위가 되거나 동일업자의 점포에서 동일인이 2이상의 상품을 구입한 때에 景品類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이상商品의 가격의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

3. 商品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금액 이상을 구입한 때에 景品類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 商品의 구입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점자에 대해 景品類를 제공하거나 구입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구입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경품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다량 거래되고 있는 상품의 거래가격중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② 景品類価額의 산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일반소비자가 景品類와 동일한 것을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구입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그 가격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래의 표준으로 사용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2. 景品類가 市販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품류제공사업자가 실제로 구입한 가격(직접제조한 경우에는 제조원가)에 동 가격의 10%를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2이상의 景品類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경품류가격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第15條 (他法과의 관계)** 사업자가 현상에 의하여 경품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현상내용이 사행심을 유발한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방법에 의하여 영리를 도모코자 하는 행위인 때에는 「복표발행현상 기타사행행위단속법」의 적용을 받는다.

**第16條 (공정경쟁규약)**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의 유인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고시의 범위내에서 경품류 제공에 관한 공통적인 협정 또는 규약(이하 "공정경쟁규약"이라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공정경쟁규약을 작성하여 이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그 규약을 시행하기 전에 미리 그 내용을 경제기획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附 則

이 告示는 198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